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123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이정신, 조태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효선, 목지선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의 2019. 10.경 사업권 양도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96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6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도료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C는 인천 서구 D에서 2019. 12. 31.까지 'E'라는 상호로 공예품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C의 아들이고, 2018. 5. 25.경부터 인천 서구 D,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 생활잡화, 공예품 등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다가, 2019. 10.경 인천 서구 G, H 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년경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4012호로 '원고가 C에게 2018년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납품한 물품대금 35,960,268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7. 'C는 원고에게 35,96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C는 2019. 10.경 피고에게 가액이 약 60,000,000원 이상인 유형 자산(수십 개의 인형 성형틀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위 사업권 양도약정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96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C는 2019. 10.경 피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위 사업권 양도약정은 형법 제327조 소정의 강제집행면탈행위이고, 피고는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96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2019. 10.경 피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2019. 10.경 피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